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관·제출의무 등〉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6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관·제출의무 등(안 제32조제7항 및 제57조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임원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등이 추천되고,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서류를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도록 함으로써 임원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 제7항 및 제57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관·제출의무 및 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32조제7항 및 제5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임원의 직무 등 - 기관장은 기관대표, 업무총괄, 경영성과 책임 - 기관장과 기관이익의 일치 - 기관장 직무대행 - 이사의 직무(안전심의, 의결참여) - 감사의 직무(업무와 회계 감사 등) - 기관장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임무수행 지원 의무 - <신 설> ○ 과태료 부과 등 - <신 설>	○ 임원의 직무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제출된 지원서류 보관의무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의무 ○ 과태료 부과 등 - 지원서류 보관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행법¹⁾은 공공기관 임원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어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어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 임원과 관련된 전문성 부족 및 캠프 출신 인사 임명 등의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논란은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 서류를 폐기하는 사례²⁾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와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원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2)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관련 서류 폐기해버린 에스알”, 데일리환경, 2024.10.14. 등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있음.

첫째,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낙하산’ 논란을 해소하고 임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또는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도, 해당 기관에서 인사채용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가 멸실되는 경우 채용의 공정성 논란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를 보존하도록 할 경우, 서류가 검찰의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 제출·활용되어 인사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검증·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수사·감사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낙하산 인사 또는 특혜입사 등을 방지하여 공공기관 임원인사 과정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3)와 동법 시행령 제19조4)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업주에게 모집·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둘째,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존 의무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⁵⁾’에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자료 등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⁶⁾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음. 또한, 해당 법률에는 공공기관에게 기록물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이 기록물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⁷⁾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6)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실제 최근 인사 관련 서류를 폐기해 논란이 되었던 주식회사 에스알(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정조치 대상 및 벌칙 부과 대상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지원서류 제출의무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9)의 ‘인사관리에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비공개 사항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련된 법률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 의무를 위해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임.

따라서 채용 공정성 논란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서류 제출의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및 채용논란 해소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서류 보관 의무 등을 기관장이 아닌 임원추천위원회에 부과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기관장에게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후보자 지원서류는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것이며 임원후보자 추천은 기관장이 아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관의무를 기관장이 아닌 임원추천위원회에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 법¹⁰⁾은 임원추천위원회에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출서류 보관의무 역시 임원추천위원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안은 현행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2조는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관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지원서류 공개가 예정될 경우 유능한 인사의 공모 참여저조 등 임원 선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고, 과태료는 민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다만, 기획재정부 의견 중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¹¹⁾를 두고 있는 등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며, 최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7조·제12조·제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생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u>추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 ----- ----- ----- <u>추천함으로써</u> <u>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⑥ (생략)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u>기관장은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제출된 지원 서류(이하 이 항에서 “지원서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
<신설>	제57조(과태료) ① 제32조제7항에 따른 <u>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주무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u>

문 의 처
02)6788-5157